

[X]. 「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」는 다음으로 대체된다.

“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

이 협정의 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개정의정서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영국 대표단 간에 다음의 양해에 도달하였다.

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당사국의 인에게 공중통신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의 부여에 대하여,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, 그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.

- 가.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절차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를 둔다.
- 나.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는 그 당사국의 인에 대한 허가의 부여가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에 유리한 추정을 사용한다. 그리고
- 다. 제7마.17조(규제 원칙), 제7마.19조(투명성) 및 부속서 7가-라(국내규제)와 합치하는 그러한 절차를 개발한다.

이 양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”